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 10. 화순군수
- 나. 회부일자 : 2000. 11. 16
- 다. 상정일자 : 2000. 11. 16

(제8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 가. 제안설명 : 민원봉사과장 배상국

나. 제정사유

- 국토이용관리법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부동산투기 및 이로 인한 지가 상승과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다. 주요내용

- 위반행위 조사·확인(안 제2조)
 -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 : 100백만원
 - 허가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 2년초과~3년이내 : 토지가격의 백분의 8(한도액 200만원)
 - 3년초과 : 토지가격의 백분의 10(한도액 200만원)
 - 이용목적의 변경승인없이 허가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 토지가격의 백분의 10(한도액 200만원)
 -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토지가격의 백분의 10(한도액 200만원)

○ 처분예고(안 제4조)

과태료 부과 처분 예고서를 통지할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의견제출서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 이의 신청(안 제5조)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양정열)

- 본 조례는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를 재정비 위한 것으로,
- 지금까지는 화순군의 규칙에 의거 시행되어 왔지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서('99. 3. 12 개정)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관련 규칙은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의 입법 취지가 부동산 투기 및 이로인한 지가 상승과 토지이용의 비 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실효성도 충분히 살리면서 토지 이용자의 권익도 침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정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건설교통부 및 도의 지시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입법 예고 및 조례 규칙 심의 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국토이용관리 관련 법령의 저촉 어부등의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

화순군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군수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 법위안에서 부과하여야 한다.

②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토지가격은 계약체결 당시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로 산정한다.

제4조(처분예고) 군수는 제2조의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결과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처분예고서를 통지하여 구술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사실,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반저리 사항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예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3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법원에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과태료의 귀속)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타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화순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